공고 제 1 호

직권조치결과 공고문

「주민등록법」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
2020년 01월 22일

효문동장 인

세대주성명	성 명 생 년 월 일	주 소	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
최**	최** 1970-11-27	울산광역시 북구 명촌13길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0-01-22